

# 수출거래추가약정서

## 【 비소구조건부 OAT, NET거래 수출대금채권매입 】

담 당	책임자	RM	부점장

년 월 일

(주)하나은행 앞

본 인

(인)

주 소

본인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제1조에서 정한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이 적용됨을 승인하며 은행과 약정한 년 월 일자 외국환거래약정서에 추가하여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 제 1조 (적용범위)

이 약정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현재 및 장래의 모든 거래(이하 통칭하여 “수출채권매입거래”라고 합니다)건에 적용합니다.

- 비소구조건부 OAT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 : 선적통지부 사후송금방식 수출거래(Open Account Transaction거래) 에서 발생하는 본인의 수출대금채권을 은행이 비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거래
- 비소구조건부 NET거래 수출대금채권 매입거래 : 수출물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하고 수입자가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대금의 결제기일이 기산되는 형태의 거래인 NET 거래에서 발생하는 본인의 수출대금채권을 은행이 비소구조건(Without Recourse)으로 매입하는 거래

### 제2조 (진술 및 보장)

본인은 은행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진술 및 보장합니다.

- 본인이 제출한 수출계약서는 유효합니다.
- 본인이 제출한 수출채권매입거래를 위한 모든 선적서류는 진정하고 완전하며 수출계약서 조건과 일치합니다.
- 본인은 수출계약서 상의 권리를 양도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동 권리의 양도에 필요한 모든 요건(배서를 포함합니다) 및 절차를 완료하며, 은행이 수출대금채권 관련 서류 및 부대서류의 소지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데 국내외에서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수출채권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금융기관으로부터도 중복하여 자금을 지원받지 않습니다.
- 본인이 은행에 선적서류를 제출하거나 은행이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한 이후에는 은행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결제기한 연장이나 수출채권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수입상과 어떠한 조건변경도 하지 않기로 합니다.
- 수출채권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최근 수입상의 신용상태 악화 등 수출채권매입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없습니다. (단 수입상의 신용상태악화 등 수출채권매입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본인이 은행에 알리고 은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수출채권 매입거래를 하기로 별도의 서면 동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본인은 은행이 수입상에 대한 신용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요청할 경우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등이 진정함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수출채권매입거래에 의하여 은행에 매각한 수출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수입상의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수출채권매입거래와 관련한 분쟁 발생을 인지한 경우 즉시 은행 앞 통지하기로 합니다.

### 제3조 (은행 앞 통지의무)

본인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즉시 은행 앞으로 통지합니다.

- 물품의 하자, 불량 등 본인에게 책임있는 사유와 사고, 천재지변, 재해로 은행이 수출대금채권을 수입상으로부터 회수하지 못할 위험이 발생한 때
- 수입상에게 재산, 경영, 업황, 기타 상환능력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알게 된 때
- 수출대금채권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 등의 법적 조치를 포함하여 수출대금채권 행사에 제한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4조 (상환의무가 없는 경우)**

수출채권매입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위험은 은행이 부담하고 본인은 수출대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수입상의 지급불능 위험 (파산, 부도 등)
2. 수입상 국가의 천재지변, 재해 등 자연적 불가항력에 의한 환거래 불능위험

**제5조 (상환의무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또는 그를 사유로 한) 모든 위험은 본인이 부담하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본인에게 수출대금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은 은행의 청구가 있는 경우 수출대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1. 제 2조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보장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본인의 귀책(선적서류의 위조, 물품의 하자·불량, 수입상과의 계약불이행 등)으로 수출대금이 미결제되는 경우
3. 수입국가 또는 관련국가 법원의 지급정지 명령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4. 수입상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인수하지 않거나 항변 또는 상계를 제기(주장)하는 경우
5. 외국(수입상의 소재국 또는 수입대금 지급국)에서의 전쟁, 혁명, 내란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입국의 제한, 금지 또는 환거래의 금지, 불능의 경우(제4조 제2호의 자연적 불가항력에 의한 환거래 불능은 제외)
6. 수출계약이 원인무효이거나 해당 수출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제공한 경우
7. 서류간 불일치 등 선적서류 하자로 수출대금이 미결제되는 경우
8. 제 3조에 따른 은행 앞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직접 수출대금을 지급한 경우

**제6조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 등)**

입금지연이자 등을 포함한 수수료, 비용 및 손해의 부담은 외국환거래약정서 (제1장 공통사항, 제2장 수출거래에 대한 특약 및 제6장 수출대금채권매입거래에 대한 특약)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7조 (차액 정리)**

수출대금이 입금되는 과정에서 해외은행(은행의 해외지점 포함)의 수수료(비용)가 공제됨에 따라 실제입금된 수출대금과 매입금액(은행이 매입한 수출대금채권 금액)과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본인은 그 차액을 은행의 청구에 따라 즉시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효력)**

이 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서,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의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이 약정이 우선합니다.

**제9조 (기타 특약사항)**

--

본인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외국환거래약정서 및 이 약정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고, 주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본인	(인)

<b>본인의 자서확인</b>	소 속	직 위	성 명	(인)
-----------------	-----	-----	-----	-----

